2024년 「**탄소신업 활성화 T2B 지원 시업**」 기업맞춤 사업화(인증·지재권 확보)지원 모집 공고

(재)전북테크노파크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탄소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와 제품 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탄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24년 2월 (재)전북테크노파크 원장

1. 개요

□ 공고명칭: 탄소산업 활성화 T2B 지원 사업 기업맞춤 사업화(인증·지재권 확보)지원
□ 공고목적
○ 탄소제품의 시장 진출과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인증 및 지재권 확보 지원
□ 공고기간 : 2024. 02. 26(월) ~ 2024. 03. 29(금) 18:00까지
□ 접수기간 : 2024. 03. 11(월) ~ 2024. 03. 29(금) 18:00까지
□ 접수기관
○ (재)전북테크노파크
□ 선정평가 : 별도 공지

2. 지원 대상 및 분야

□ 모집대상

- 전북특별자치도내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등)이 위치한 탄소 융복합소재・ 응용산업과 관련된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
- 신청제외 대상(유의사항 참고)
 - ①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기업
 - ②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③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또는 기업 대표자
 - ④ 수행실적 확인이 불분명하거나 관련분야 재직확인이 불가능한 상시근로자
 - ⑤ 부동산업, 유흥업 등 정부지원사업 제한분야 제외 등

□ 지원내용

기업 맞춤화 사업화(인증 및 지식재산권) 지원

- 접수기관 : (재)전북테크노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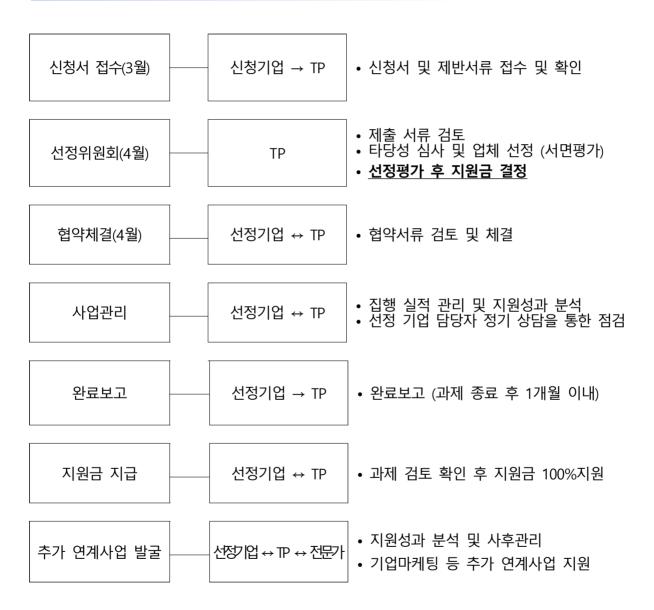
-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5개월(사업기간 조정 가능)

- 탄소소재 융ㆍ복합 제품의 판로개척에 필요한 인증 및 지식재산권 확보 등

구 분	내용		
프로그램	인증지원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지원내용	○ 인증취득시 소요되는 인증비 ¹⁾ , 시험비 ²⁾ , 컨설팅비 ³⁾ 의 일부 지원 - 국내외 제품 인증(시스템 인증 제외) 【참고1】국내인증 항목 【참고2】해외규격인증 항목 (※ 특허 등록 제외)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10백만원 이내(부가세 제외, 4개사 내외 지원)		
비고	 ● 탄소사업화기업* : 총 사업비의 80% 지원 ● 탄소기업지정** : 총 사업비의 85% 지원 ● 우수 탄소기업*** : 총 사업비의 90% 지원 * 탄소사업화기업: 전북특별자치도내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등이 위치한 탄소 관련된 사업화 추진 기업 - 탄소소재(탄소섬유, 활성탄소, 키본블랙, 인조흑연, 탄소나노튜브, 그래핀 등)를 활용한 복합재 중간재 완제품 등 응용제품을 개발생산하는 기업 ** 탄소지정기업: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라 전북특별자 치도자사가 인정하는 탄소기업 *** 우수탄소기업: 탄소자정기업 대상 중 우수 탄소 기술 및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성징잠재력을 갖춘 기업으로 받은 기업으로 우수 탄소기업 자정서를 받은 기업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금액 변경될 수 있음 		

- ※ 인증분야별 개별한도는 기업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항목은 다음과 같음
 - 1)인증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 * 심사비 :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 ** 법정대리인 선임비 : 인증(또는 등록) 절치상 필수로 현지 법정대리인(책임자)을 선임해야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 ²⁾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³⁾컨설팅비 :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3. 추진절차



- ※ 상기 일정은 전담기관 및 주관(지원)기업(관)의 사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 '코로나19'상황에 따라 상기 일정 및 평가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모든 대상 기업에 사전 공지 예정임

4. 사업신청 및 접수

- □ 공고기간 : 2024. 02. 26(월) ~ 2024. 03. 29(금) 18:00까지
 - 전북테크노파크(www.jbtp.or.kr)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 전북 R&D종합시스템(http://rnd.jbtp.or.kr) 공지사항 게재
- □ 접수기간 : 2024. 03. 11(월) ~ 2024. 03. 29(금) 18:00까지
 - ㅇ 마감시간 이후 건은 과제신청이 불가
 - 전산등록마감일에는 데이터접속 증가로 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조기 입력완료 요망(전산접수 가능용량 100MB)
 - ※ 접수 마감시간까지 전산 접수 시스템에 제출된 과제만을 인정하며, 접수 마감 시간 이후 접수된 과제는 자동탈락 접수 불가사항 4월 1일(월) 통보예정

□ 신청방법

- 전북R&D종합정보시스템(http://rnd.jbtp.or.kr) 회원가입 후 [과제신청]에서 접수
- 사업접수 시 신청서를 비롯한 제출서류 일체를 폴더 안에 아래 서류번호순 으로 나열하여, 폴더를 "*.zip"파일로 변환 후

"2024년 탄소산업 활성화 T2B 지원사업_(기업명)" 으로 변경하여 업로드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양식) 및 구비서류 1식 일체 "*.zip" 파일 제출 (사업신청서는 가능한 한글파일(직인필수)로 제출 요망)
 - 기업 맞춤화 사업화(인증 및 지식재산권) 지원

No	제출서류	비고
1	○ 신청서【서식 제1호】	
2	○ 사업계획서【서식 제2호】	
3	○ 사업자등록증 1부	
4	○ 2024년 4대 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5	○ 지원신청금액 산출 견적서	
6	○ 최근 2개년도 표준재무제표(2022년도, 2023년분) - (2022, 2023년) 국세청 발급 표준재무제표 제출 - (2023년)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결산 및 추정 재무제표제출 *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추정 재무제표를 제출하고 추후 국세청 발급 확정 재무제표 별도 제출 * 재무제표 제출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인 기업은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그 외 기업은 결산보고서 또는 세무사 확인자료 제출 * 선정평가시 제출한 2023년 가결산 및 추정 재무제표상 사후관리 대상이었으나 국세청 발급 확정 재무제표상 사전지원제외(자본전액잠식) 대상일 경우 탈락, 협약해약 또는 과제 중단될 수 있음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2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2023년도 재무제표만 제출 * 업력 1년이 되지 않은 기업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제출	필수
7	○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 국세 납세증명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발급가능 - 지방세 납세 증명서: 민원24(minwon.go.kr) 발급가능)	
8	○신용정보 조회동의서 및 자기부담금 출자확약서【서식 제3호】	
9	○ 기업/기술 소개자료(자유양식)	
10	○ 기타 지원여부를 결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선택
11	○ [설문지] 수요기술 조사서	

ㅇ 문의처

- (재)전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기술사업화팀 정성룡 주임연구원 Tel: 063-219-2165 / E-mail: srjeong@jbtp.or.kr

〈기타 유의사항〉

- 사업 신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 사실에 대해 담당자에게 확인 필요
- 신청서 오기재 등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
- 선정과정에서 추가 자료제출이 있을 수 있음

5.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 선정절차
 - 서면평가
- □ 평가기준
 - 기술성/사업성/기대효과 관점에서 정성적으로 지원 타당성 평가 (합산평균 70점 미만일 경우 지원 제외)

검토항목	평 가 지 표	세 부 내 용	
취득의	○ 인증 목적 부합성 및 비용 적정성	-지원사업의 목적과의 부합여부 -소요비용이 적정 여부	
적정성 (20)	○ 과제수행 방법 및 사전준비성	-목표달성 위한 과제수행방법의 적정성 -기초데이터, 특허, 개념설계 등 과제의 사전준비	
기술성	○ 상용화대상기술	-탄소소재 및 응용부품 활용 정도 -신청과제(기술개발)을 통한 생산제품화 가능성 -과제 책임자의 전문성	
(30)	○ 기술개발우수성	-국내.외 기존 기술대비 차별성 정도	
	○기술의 파급효과	-타 분야(제품)로의 기술적 파급효과정도	
	○시장전망	-시장규모, 수익성(투자효과), 시장진입·확대 가능성	
사업성 (30)	○사업화전략의 적정성	-제품 및 기타 개발전략(사업화전략)의 적정성	
(= 5)	○판로개척 가능성	-제품의 판로개척(마케팅) 가능성	
지역경제	○지역경제파급효과	-제품의 생산성 및 매출 향상 가능성	
기여도 (20)	○ 일자리창출효과	-제품을 통한 고용창출 증대 가능성	

□ 가점사항

구 분	내 용
탄소지정기업	○ 평가지표 합산평균에 3점 가점 부여
우수탄소기업	○ 평가지표 합산평균에 5점 가점 부여

□ 유의사항

구 분	내용
지원신청 불가	※ 3년 연속 ('21, '22, '23년도)인증 수혜기업 지원신청 불가 (단, 제품분야,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사업에 참여하여 인증을 획득한 기업 중 기 지원받은 동일한 제품(HS CODE 6자리 기준)으로 동일한 인증을 획득하고자 신청하는 기업 (단, 신규로 수출하고자하는 국가의 바이어가 해당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는 지원가능) ※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중인 제안자 또는 제안기업이 신청한 경우 지원 제한 ※ 본 사업 취지 목표와 상이한 경우(단순 R&D아이템, 유흥, 퇴폐 등)지원 제한 ※ 인증 자격 연장 및 규격 추가, 제조국 대한민국 이외 표기 인증 지원불가 ※ 정부 및 타기관, 테크노파크에서 시행하는 국내인증 취득 지원사업과 동 사업 중복수혜불가(단, 제품분야,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유사한 특허, 출원, 저작권 등이 타인에 의해 이미 출원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평가(지원) 대상에서 제외
신청서 관련	 ※ 사업 신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 사실에 대해 담당자에게 확인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오기재 등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 ※ 선정과정에서 추가 자료제출이 있을 수 있음
컨설팅 관련	 ※ 컨설팅 기관을 활용하여 사업에 참여할 경우, 복수의 컨설팅기관에서 비교 견적을 받아 가격, 컨설팅기관의 지원 실적 등을 감안하여 결정 권장 (컨설팅기관 결정 후에는 담당 컨설턴트가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인증획득 절차 진행을 권장) ※ 컨설팅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인증 또는 미등록 컨설팅기관을 활용한 인증은 컨설팅비를 제외한 인증비, 시험비만을 지원 ※ 인증획득 완료 후 실제 소요비용의 일부를 성공조건부로 사후 지급하는 사업임 (기업의 부담이 전혀 없게 하겠다는 일부 컨설턴트나 컨설틴기관의 허위 제안이 있는 경우 법인으로 신고)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 및 사업신청자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 6 -

- ※ 신청자(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 본 공고로 제출된 기술 소유권은 사업 지원 제출자에게 있으며, 평가 절차 진행과정에서의 기술 외부 유출은 없음
- ※ 탄소산업활성화 T2B지원사업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또는 행사에 필수 참여해야하며, 미참석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지원을 받은 수혜기업은 향후 5년간 (재)전북테크노파크에서 실시하는 성과조사에 응해야함

6. 유의사항/공지

- (유의사항) 선정평가 이후 과제 수행 중에도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됨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취소 및 협약 해약될 수 있음
 - 본 사업 취지 목표와 상이한 경우(단순 R&D아이템, 유흥, 퇴폐 등) 지원 제한
-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중인 제안자 또는 제안기업이 신청한 경우 지원 제한
- 기업의 부도 또는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홍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 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희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최근(2023년) 결산 기준 완전자본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접수 마감일까지 2023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2023년도 말 기준 추정재무제표를 제출하되 신규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된 기관은 2023년도 국세청 확정 표준재무제표증명 서류 발급시 즉시 제출해야 하며, 2023년도 국세청 확정 표준재무제표 확인결과 규정에서 명시된 지원대상 제외 대상(자본전액잠식)에 해당될 경우 평가결과 와 관계없이 선정취소, 협약해약 될 수 있음)
- 타 사업 참여 사업 중 지원 분야 중복 건 지원 제한
-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유사한 특허, 출원, 저작권 등이 타인에 의해 이미 출원 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평가(지원) 대상에서 제외

○ 공지

- 제출된 서류 및 사업신청자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 신청자(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

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기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고로 제출된 기술 소유권은 사업 지원 제출자에게 있으며, 평가 절차 진 행과정에서의 기술 외부유출은 없음
- 탄소산업활성화 T2B지원사업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또는 행사에 필수 참 석해야하며, 미참석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을 받은 수혜기업은 향후 5년간 (재)전북테크노파크에서 실시하는 성과조사에 응해야함

- 부정청구에 대한 제재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2020.1.1.)에 따라 각종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원래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가됨

* 재제부가금

- ① 허위청구(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금 등을 청구하여 받은 경우): 받은 지원금의 5배
- ② 과다청구(받아야할 지원금 등 보다 초과청구하여 받은 경우): (받은 지원금-원래 받아야 하는 지원금)의 3배
- ③ 목적 외 사용(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경우):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 외 달리 사용한 지원금)의 2배

사업신청, 용역, 구매, 공사 등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을 요구할 경우에는 (재)전북테크노파크 고객만족감사팀(063-219-2351) 또는 홈페이지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는 부패방지 관련 법률 등에 의거 신분비밀보장을 받게 됩니다.

【참고 1】 국내인증 항목

우선구매대상	① 성능인증 ② NET(신기술인증) ③ NEP(신제품인증) ④ GS(소프트웨어 품질인증) ⑤ 우수조달제품 ⑥ 녹색인증 ⑦ 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물품 ⑧ 구매조건부 R&D 시업을 통해 개발에 성공한제품 ⑨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제품 ⑩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 ⑪ 산업융합품목 ⑫ 개발선정품 ⑬ 성과공유기술과제제품 ⑭ ICT융합 품질인증제품 ⑮ GD(우수디자인) ⑯ 산업융합적합성인증제품		
	① KS인증 ⑱ 환경마크 ⑲ KC(안전관련인증) ⑳ GR(우수재활용)		
기타인증	기술/품질인증	②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기나인공	신인드 인증	② 단체표준인증 ③ Q마크 인증	

* 시스템 인증은 제외대상이며, 이 외의 인증에 관하여 사업타당성 여부에 따라 지원가능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2020. 1. 13,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12조 제1항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지침

【참고 2】해외인증 항목

국가별 (지원건수)			
(시전신구)	3-A	AAR	ABS
	(미국낙농및식품가공기기인증)	(미국철도협회)	(미국선급협회)
	ACMI AP (미국창작재료협회)	AGA (미국가스협회)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AISC	AMECA	ANSI
	(미국강구조물협회)	(미국자동차안전부품인증)	(미국규격협회)
	ANSI/ASHRA	ANSI/BHMA	ANSI/BIFMA
	(미국냉동공조학회규격)	(미국건축제품인증)	(미주사무및가구제품인증)
	API	ASME	ASTM
	(미국석유학회)	(미국기계학회)	(미국시험재료협회)
	BPI	CADR	CEC
	(미국생분해성제품인증)	(공기정화률인증)	(캘리포니아에너지효율관리제도)
	CPSC	CPSIA	CTI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미국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미국냉각탑협회, 미국열성능)
미국	Dermatest (화학제품인피자극성등급인증)	DLC (북미에너지절감인증)	DOE office 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에너지효율)
	DOT	Energy Star	EPA
	(미국운수성)	(미국에너지스타)	(미국환경보호국인증)
	ETL	ETL SANITATION	FCC
	(미국전기시험연구소)	(국제보건위생인증)	(미국연방통신위원회)
	FCN	FDA	FDA-GRAS
	(미국식품포장제등록제도)	(미국식품의약품국)	(미국식품안전물질등록)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미국연방항공국)	FedRAMP (미국클라우드보안인증서비스)	FHWA (미국연방고속도로관리국)
	FIPS	FMVSS	Fugitive Emission Test
	(연방정보처라표준인증)	(미연방자동차안전기준)	(밸브유해물질누설인증)
	Gluten Free (글루텐안전인증)	Gold Seal (미국음용수관련인증)	Green Seal (친환경인증)
	Greenguard (실내공기질 시험·인증)	GSA (미국연방조달청)	Halogen Free (할로겐안전인증)
	HIRF (고강도전자기장)	IACP (국제경찰청장협회)	IAPMO (미국배관자재환경인증)
	ICC-ES Evaluation Reports	ITE Compliance	MiamiDade NOA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		
	(미국건축자재관련제도)	(북미신호등인증)	(미국건축자재인증-플로리다주)
	MIL-STD-810G (미국육군장비규격)	MIL-STD-901D (미국해군장비규격)	NCHRP (미국고속도로관련 시설물연구프로그램)
	NEBS	NFRC	NGV2
	(미국네트워크장비구축시스템)	(창호단열규정)	(고압연료탱크규격)
	NIJ	NIOSH	NMMA
	(미법무성사법연구소)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미국요트트레일러인증)
	NOP (유기제품인증)	NPC (미국위생도기규격)	NR (미국국가위원회 원자력부품수리인증)
	NRTL(미국국가인정시험소)* (ARL,BACL,CSA,CSL,FM,IAPMO,I TSNA,MET,NNA,NSF,QAI,QPS,S GS,SWRI,TUVNorth,TUVPTL,TUV SUD,TUVPSG,UL19개기관)	PTCRB (북미휴대폰인증)	SCS (미국과학적환경인증시스템)
	SRCC	UL CAP	UL ECV
	(미국태양열집열기인증)	(사이버보안평가프로그램인증)	(환경성주장검증)
	UPC	USCG	USDA
	(미국배관및기계인증)	(미국해양안전관련규제)	(미국농무성환경인증)
	Water Sense (미국환경보호국인증) WQA (미국수질협회)	WH-ETL (북미건축자재마크)	WHI (북미지역건축자재인증)
	(미국구월업회) AdBlue	BPR	BSI BS EN489
	(유럽자동차매연저감제인증)	(유럽살생물제관리법)	(열(히트)파이프지침)
	CCNR	CE	CEN/TS 17342
	(라인강항해중앙위원회인증)	(유럽공동체마크)	(오토바이도로안전기술규격)
	COSMOS	CPNP	Eco-Labeling
	(유럽유기농및천연화장품인증)	(유럽화장품등록)	(EU환경마크)
	ECO-PASSPORT	EFSA	EHEDG
	(섬유제조공정인증)	(유럽식품안전청)	(유럽위생설계및디자인협회)
	e-Mark (유럽연합차량용 부품안전인증마크)	EN ISO 20471 (반사색안전조끼인증)	ENEC (유럽규격전기인증)
유럽	ESV	EU 2092/91	EU-MED
	(유럽위성지구국관련인증)	(EU의유기농식품인증)	(유럽선박장비인증)
	European Privacy Seal	FIBC	Green Dot
	(유럽프라이버시씰)	(산업용포장재의정전분류)	(유럽포장재폐기물관련인증)
	M Classification (공공건물내섬유재료규제)	MPA (유럽소비자보호시험소)	Novel Food (신규식품과신규식품 첨가제에대한인증)
	Oeko-tex	REACH	Regulation EC No 1223/2009
	(유럽섬유환경인증)	(유럽의신화학물질관리제도)	(유럽화장품유해물질규제지침)
	Regulation EC No 1935/2004	Regulation EC No 79/2009	RoHS
	(유럽식품접촉물질규제지침)	(유럽수소자동차규제지침)	(유럽유해물질사용제한)
	SEMI (유럽반도체장비인증)	Solar Keymark (유럽태양열제품적합성인증)	
네덜란드	KEMA	Kiwa Water Mark	MIFARE Security Certification
	(네덜란드전기시험소)	(네덜란드위생안전인증)	(반도체RF보안인증)
덴마크	DEMKO (덴마크전기기기검사협회)		
	AD2000	BDIH	BV-043
	(독일압력용기인증)	(독일유기능마크인증)	(독일해군장비규격)
독일	DIN	DVGW	GL
	(독일규격협회)	(독일가스식음료전문가협회)	(독일선급협회)
그 큰	GS	IT-Grundschutz	KTW test certification
	(독일품질안전)	(정보보호인증제도)	(독일식수관련인증)
	LFGB	LGA	LTF
	(독일식품용품법)	(독일반이에른공업시험청)	(독일감항성시험)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		
	TUV (독일기술관리협회)	VDE (독일전기기술자협회)	VdS (독일보험협회인증)
	Allergy UK (영국알러지협회)	ASTA (영국안전규격)	BABT (영국통신기기승인)
OI I	BBA (영국건자재인증)	BSI (영국표준협회)	CPA (상업용제품인증)
영국	FIRA (영국가구산업연구협회)	I-LIDS (영국경찰비디오분석인증)	LR (영국선급협회)
	WRAS (영국수질협회인증)		
이탈리아	IMQ (이탈리아전기기술협회)	RINA (이탈리아선급협회)	
프랑스	BV (프랑스선급협회)	CSTB (프랑스건축자재인증)	DGCCRF (프랑스의소비자보호 및 불공정경쟁감시국인증)
	ECOCERT (프랑스생산공장인증)	GTT (프랑스GTT선급)	NF (프랑스표준규격)
벨기에	CEBEC (벨기에전기기기시험소)	Vincotte (벨기에환경인증)	
스페인	AEI Seal of Cybersecurity for Organizations (사이버보호인증제도)	AENOR (스페인규격협회)	National Security Framework (스페인국가보안인증제도)
핀란드	FIMKO (핀란드전기기기검사협회)		
스웨덴	SEMKO (스웨덴전기기기협회)	SP (스웨덴국립시험연구협회)	
노르웨이 -	DNV (노르웨이선급협회)	NEMKO (노르웨이전기기기협회)	NIPH (노르웨이음용수관련인증)
⊥ — I4I ≈1	NORSOK (노르웨이표준해양규격)		
스위스	ESTI Safety Mark (전기자동차충전플러그인증)		
	BAA (일본자전거승인)	BOKEN (일본방적검사협회)	F☆☆☆☆ (일본친환경규격)
	FESC (일본소방설비인증)	F-mark (일본전기용품및부품)	Japan Type Approval of Maritime Equipment (일본선박형식승인)
	JAPEIC (일본용접관리프로세스인증)	JAS (일본유기제품인증)	JCMVP (암호모듈인증)
	JET PVM (일본태양광인증)	JHOSPA (일본위생수지협의회인증)	JIS (일본표준규격)
일본	JISEC (IT시큐리평가및인증)	JPAL (일본의료기기)	JWWA (일본상수도협회)
	MPHPT (일본우정통신성)	NK (일본선급협회)	PMDA (JPAL) (일본의약품인증)
	Privacy Mark (프라이버시마크제도)	PSC (일본소비생활용제품안전인증)	PSE (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S-mark (일본전기용품시험소)	VCCI (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협의회)	일본ECOmark (일본친환경제품인증)
	일본건축자재평가	일본국토교통성인증	일본무선통신인증 (JAPANMIC,JATE,TELEC)
	일본불연재료인증 CU	일본위생허가	일본철골제작 공장인증 FSB
	(러시아강제인증)	Fire Protection Certificate (소방안전증명서)	(러시아암호화인증)
	GOST (러시아표준규격)	Pattern Approval Certificate (러시아계측기인증)	RS (러시아선급협회)
러시아	RTN (러시아연방유해산업시설인증)	Russia Hygienic Conclusion (러시아위생증명)	수출.입수산물.수산가공품의품질 관리 및 위생안전
	의료기기러시아연방보건감독청 (RegistrationCertificateof MedicalDevices)		

- 11 -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	
말레이시아	DOSH	MDA	SIRIM
	(말레이시아산업안전보건국)	(말레이시아의료기기등록)	(말레이시아표준산업규격)
멕시코	COFETEL	NOM	SSA
	(멕시코통신인증)	(멕시코제품안전규격)	(멕시코보건부-위생등록)
대만	ARTC	BSMI	CNS
	(대만자동차및부품인증)	(대만표준검험국)	(대만국가표준)
	CR	NCC	TFDA
	(대만선급)	(대만통신기기인증)	(대만의료기기)
태국	TISI (태국공산품규격제도)	태국 식약청	ANNUCA
브라질	ABESE (브라질전자보안제품인증제도) INMETRO (브라질강제인증)	ANATEL (브라질국가정보통신국)	ANVISA (브라질식품의약품인증)
사우디 아라비아	SASO (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터키	TSE (터키강제인증)	CDC	Data Duata stian Trustmanl
	BS476-22	CPS	Data Protection Trustmark
	(방화도어테스트)	(싱가포르제품안전표시)	(데이터보호표준및적합성인증)
	HAS	IMDA	MTCS
싱가포르	(싱가포르의료기기등록)	(싱가포르통신장비인증)	(클라우드보안인증)
	NITES	PSB	SINGAPORE GREEN LABEL
OL크레디니	(NITES보안인증) ANMAT	(싱가포르생산성표준원) IRAM	(싱가포르친환경인증마크)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의료기기인증) ARAI	(아르헨티나전기안전협회) BIS	CDSCO
	(인도자동차협회)	(인도제품인증)	(인도약품표준통제국)
	CPRI	CRS	DCG
01 =	(인도전기전력인증) IBR	(인도전자제품강재등록제도)	(인도식약청) MTCTE
인도	(인도보일러규정)	(인도선급인증)	(인도통신장비보안규제)
	RDSO	STQC	TRA
	(인도철도인증)	(인도생채인식장치인증)	(인도및티벳지역농자재인증)
	WPC (인도통신기기인증)	인도자동차부품인증 (CentralMotorVehicle RegulationApproval)	
인도네시아	BPOM	SNI	인도네시아 유무선
	(인도네시아식약청등록)	(인도네시아국가규격)	통신기기 인증
	AQSIQ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	CCC (중국강제인증)	CCIS (네트워크핵심설비 및 사이버보안전용제품안전인증)
	CCS	CEL	CGAC
	(중국선급인증)	(중국에너지효율라벨)	(중국가스용품품질감독관리)
	China Environmental Labelling	China MSDS	China REACH
	(중국환경표지인증)	(중국물질안전보건자료)	(중국화학물질관리제도)
	China RoHS	CMA	CPA
	(중국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	(중국계측학허가인증)	(중국계측기형식승인)
	CSEL	CSQL	GB 18030
중국	(중국보일러및압력용기인증)	(중국안전품질승인)	(중국어인코딩인증)
	GB TEST	HG/T 2888-2010	ICAMA
	(중국국가표준시험성적서)	(중국고무장갑시험검사) MOH	(중국농업부등록)
	LA mark	(중국수입식용수관련	NAL
	(중국노동보호용품마크인증)	안전제품위생허가)	(중국통신장비허가제도)
	NEPSI	NIM	NMPA
	(중국방폭관련인증)	(중국계량과학원)	(구.CFDA-중국의료기기허가등록)
	NMPA	SAMR	SRRC
	(구.CFDA-중국화장품허가등록)	(구.CFDA-중국보건식품허가등록)	(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
	건설산업과학기술 성과평가인증	상용 암호화 제품 인증	신식품원료허가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	
	77 117 43	77.5	(신식품원료및첨가제허가)
-	중국 비료 허가	중국 소독제 등록	중국 수입 첨가제 등록
	중국 유기농 식품 인증	중국 컴퓨터안전제품 판매허가	중국미생물수입등록
	중국식품수화인등록 (입경화물검사검험증명)	중국자율제품인증 (CQC,CVC등)	폐기물 선적 전 검사
카자흐스탄	GOST-K (카자흐스탄인증)		
중동	GCC (중동적합성마크)	CCNC	CNIF
	CAN/CGSB155.20 (캐나다방염원단인증)	CCMC (캐나다건축자재인증)	CNF (캐나다화장품사전신고)
#나다	CRN (캐나다압력제품등록)	CSA (캐나다표준규격)	CSA STAR (클라우드서비스인증)
711-17-1	CWB (캐나다용접협회)	HC (캐나다의료기기인증)	(캐나다산업성)
	ISO/IEC 27018 (개인식별정보보안통제)	NRCan-Energy Efficiency (캐나다에너지효율관리제도)	TC (캐나다위험물질운송인증)
쿠웨이트	KUCAS (쿠웨이트제품적합인증)		
페루	Registro sanitario (보건등록증)		
콜롬비아	ICONTEC (콜롬비아표준산업규격)	RETIE (변압기강제인증)	
폴란드	B mark (폴란드전기안전인증)	NTA (폴란드건축자재인증)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판매인증서		
필리핀 -	ERC (필리핀에너지규제위원회)	ETV-Philipphines (필리핀환경기술검증)	PEFC (필리핀산림제품인증)
-	PFDA (필리핀식품의약청)		
라오스	MPT (라오스우정통신부인증)		
베트남	CR Mark (베트남품질안전인증) 베트남 의료기기 수입허가	VNEEP (베트남에너지효율인증) 베트남보건부의약청화장품등록	베트남 식품 인허가
	ACE	ACRS	ADR
	(호주ASD암호화평가인증)	(호주신뢰성인증)	(호주자동차안정및배기량규격)
_	AGA (가스안전인증·호주)	AISEP (호주정보보안평가프로그램)	APEC CBPR (APEC개인정보보호인증)
호주	AS (호주규격협회)	A-Tick (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유선)	CodeMark (호주건축법규위원회건축자재인증)
_	C-Tick <u>(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무선)</u> TGA	RCM (호주전기전자강제인증규격)	SAI GLOBAL (호주품질보증협회:QAS)
	TGA (호주의약품규제기관) OFTA	Water Mark (호주배관제품인증)	WELS (호주물효율라벨링제도)
홍콩	(홍콩이동통신인증)		
이라크	COSQC (이라크표준)		
남아프리카	ICASA (남아프리카공화국 독립통신위원회)		
이란	CRA (무선통신기기인증)	ISIRI (이란강제인증)	MOH (이란보건부등록)
나이지리아	SONCAP (나이지리아강제인증)		
아랍	ECAS	EQM	G-Mark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			
에미레이트	(전자기기인증제도)	(아랍에미레이트제품적합성마크)	(GSO통합인증)	
이스라엘	SII (이스라엘표준연구소			
우크라이나	Ukr SEPRO (우크라이나제품인증)			
모로코	모로코화장품사전등록 (모로코화장품사전등록)			
칠레	SEC (칠레에너지관리국)			
미얀마	MPU (미얀마신용카드단말기인증)			
	AEC-Q (자동차용전자부품품질인증)	AEM (장비제조및서비스에관한 국제무역협회인증)	ALE 1.0 (RFID제품인증)	
	AMCA (공조기시스템국제협회)	ATP (부패성음식의수송적합승인)	BLUESIGN (섬유화학물질인증제도)	
	Bluetooth (블루투스제품인증)	BQB (블루투스제품간호환성 확보목적의인증)	BRC IOP (국제식품안전협회 포장재승인규격)	
	BRCFOOD (식품안전글로벌규격)	Chip card approval (스마트카드사승인)	CMMI Lv3~Lv5 (소프트웨어개발역량평가인증)	
	Common Criteria for Information Technology Security Evaluation (정보기술보안평가)	Conforming Golf balls (국제골프제품안전인증)	COSPAS-SARSAT (조난경보기또는 위치정보제품인증)	
	DLMS-COSEM (계량장비프로토콜의시험인증)	EAC (CU) (러시아화장품인증)	EFfCl (유럽화장품원료협회)	
	EMV (국제IC카드보안인증)	EtherCAT Compliance test (이더캣적합성테스트)	FAIRTRADE (국제공정무역마크)	
	FIDO (생체인증)	FIFA IMS (InternationalMatchStandard)	FIFA QUALITY PRO (국제축구연맹품질인증)	
	FSC (국제산림관리협의회)	FTC (화염시험인증)	G7Master (국제인쇄표준)	
7.71	GLOBAL G.A.P (국제우수농수산물인증)	GOTS (국제유기농섬유규격)	GRS (국제재생섬유친환경인증마크)	
국제	HALAL (이슬람음식및영양협회)	HDMI (PC와디스플레이의 인터페이스표준규격)	HSNO APPROVAL (유해물질과신규생물관련인증)	
	IAAF (국제육상경기연맹)	IECEE (IEC안전규격상호인증)-CB	IECEx (국제방폭상호인증)	
	IFOAM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	ILO (국제노동기구)	IPA (클린룸인증)	
	ISO 12500 (압축공기용필터국제표준)	ISO 22899 (해양제트화재발생위험안전인증)	ISO 26262 (자동차기능안전성국제표준)	
	ISO 27017 (클라우드정보보안지침)	ISO 3834 (용접ISO인증)	ISO 7096 (토공기계인간관련진동규격)	
	ITF Ball Approval (국제테니스연맹테니스볼승인)	ITF Classified Court pace (국제테니스연맹 테니스코트제품인증)	IWA 14-1 (국제차량보안안전인증)	
	KOSHER (유대교식품적법인증)	LPCB (보안및화재예방인증)	MPR2 (전자파측정및검사규격)	
	NADCAP (국제항공기자동차부품인증)	NFPA1971 (가연성제품의화재방지규격)	NON GMO (유전자변형농산물 미사용인증마크)	
	OCS (유기농섬유인증)	OE (유기농목화섬유에대한인증)	OIML (국제법정계량기구)	
	OK compost (생분해성인증)	OpenADR (전력수요관리인증)	PCI (신용카드단말기보안국제규격)	
	Profibus (국제공장자동화기기인증)	QI (무선충전표준인증) - 14 =	R&A Certificate (골프공공인구)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		
	SG-Mark	SIL	SINCERT
	(소비자제품안전인증)	(국제안전레벨등급인증)	(고압전기제품및부품인증)
	SQF (식품품질안전)	TCO05 (정보사무기기효율인증)	The Skin Cancer Foundation's Seal of Recommendation (피부유해자외선차단검증인증)
	Toxproof	UCI	UN38.3
	(환경유해물질안전마크)	(국제사이클연합인증)	(리튬배터리운송안정성시험)
	USB-IF	Visa PayWave	WHO
	(USB임플리멘터스포럼)	(신용카드단말기인증)	(세계보건기구)
	Wi-Fi Certified (Wi-Fi상호운용성인증)	WPS (선급용접절차승인)	Z-Wave Product Certification (전자제품상호호환성인증)